

일반사무위탁계약 변경계약서

본 일반사무위탁계약 변경계약서(이하 “본 계약”)는 2021년 [12]월 [23]일(이하 “본 계약일”) 아래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다.

- (1)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, 15층(역삼동,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)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하나트러스트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(이하 “갑”)
- (2)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, 10층(을지로2가)에 본점을 둔 하나펀드서비스 주식회사(이하 “을”)

전 문

갑과 을은 2019년 02월 18일 갑이 을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갑의 주식발행업무 및 일반사무업무를 담당할 일반사무 수탁회사로 선임하고, 을은 일반사무 수탁업무를 이행하는 내용의 일반사무 위탁계약서(이하 “본건 위탁계약서”)를 체결하였다.

갑과 을은 본건 위탁계약서의 일부 사항을 변경하고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

다 음

제 1 조 (정 의)

본 계약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은 이상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본건 위탁계약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.

제 2 조 (본건 위탁계약서의 변경)

본건 위탁계약서의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, 본건 위탁계약서 제8조(보수)와 관련하여 갑은 갑의 제6기 및 제7기 사업연도 기간에 대한 보수로서 금 9,555,560원(이하 “최종 보수”)을 2021년 [12]월 [30]일 을에게 지급한다. 명확히 하면, 최종 보수는 갑이 제7기 사업연도 내에 청산하는 경우 추가 정산되지 아니한다.

제 3 조 (효력의 발생 등)

- ① 본 계약은 본 계약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- ② 본 계약은 본건 위탁계약서와 단일한 문서를 구성하며,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본건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의하되, 본 계약과 본건 위탁계약서 사이에 배치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.

(다음 기명날인 또는 서명 페이지를 위하여 이하 여백)

위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.

갑: 주식회사 하나트러스트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, 15층(역삼동,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)

대표이사 박 영 희



을: 하나펀드서비스 주식회사

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, 10층(을지로2가)

대표이사 오 태 균

